

##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 건

# 검 토 보 고

### 1. 제안사유

「지방재정법」 제77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및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 재산 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으로 취득하여야 할 중요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우리구 의회의 의결을 받아 목적사업을 차질 없이 집행코자 함.

### 2. 주요골자

가. 괴정1동 사하시립도서관뒤 7개통 지역은 노인인구 492명에 비해 노인여가 복지 시설이 없으며, 또한 신축부지 확보가 어려우므로 기존의 단독주택을 매입하여 경로당으로 활용하고자 함.

나. 괴정4동 희망경로당은 '74년 3월에 준공된 건물(15평)이며, 현재 할머니 경로당으로 사용중이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2층으로 확대 신축하여 할머니 및 할아버지들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1) 취득대상 재산현황

- 취득구분 : 건물 및 토지
- 위 치 : 괴정1동 1040 - 53
- 건물면적 : 129.48㎡(39.2평) ▷ 3층
- 토지면적 : 95㎡(28.7평)
- 매입예상금액 : 130,000천원

#### 2) 신축건물 현황

- 취득구분 : 신축
- 위 치 : 괴정4동 1130-14
- 건물면적 : 198㎡(층별 30평) ▷ 2층
- 토지면적 : 229㎡(69평)
- 매입예상금액 : 260,000천원

### 3. 참고사항

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나.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7조

### 4. 검토의견

◎ 본 변경승인의 건은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승인 받은후 연도중에 변경 사항이 있어 승인을 받으려는 것으로

◎ 괴정1동 1040-53번지 단독주택을 구입 경로당으로 사용코자하는 것과(총 매입비 : 130,000천원예상), 괴정4동 1130-14번지에 있는 희망경로당을 2층으로 신축하여 남,여 경로당으로 확대사용코자 하는 것(총 신축금액 : 260,000천원예상)으로 노인들의 여가활용 공간을 제공하려는 좋은 시책이라 생각됨.

◎ 하지만 이와같은 좋은 시책들을 추진함에 있어 늘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행정절차의 미숙이라 하겠는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면 “년도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05년도 1회추가경정예산에 예산을 먼저 편성하였음은 법의 절차에 따라 집행해야 할 집행부가 법과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사안을 볼때 승인해 주지 않을 수 없는 내용인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함이 좋다고 생각됨.